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전북 김제시 가금농가(산란계)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

1. 관련

가.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-11222(2023.12.8.)호

나. 전라북도 동물방역과-20532(2023.12.8.)호

2. 전북 김제시 소재 가금농장(산란계)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(H5형)이 확인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에 따른 방역조치

□ AI 방역대책상황실·대책본부 운영(공통)

-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, 협회 및 전국 지자체는 AI 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

□ 의사환축 발생 농장 소재 시·도 및 시·군·구(전라북도)

- 검출 농장에 대한 조치
 - 해당 농장의 사육가금 등 고병원성 AI 감수성 동물은 즉시 살처분 명령 조치
 - 농장주(가족 및 직원 포함), 차량, 가금 및 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
- 의사환축 발생 농장 및 역학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및 출입자·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후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여 농식품부·검역본부 및 관련 시·도, 시·군·구에 보고(통보)
- 차단방역 강화조치
 - 의사환축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
 - * 해당농장 중심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예찰
 -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(가금 사육 전업농)에 대해 12.13일까지 정밀검사(PCR)를 완료하고(관리·보호지역은 12.11일까지), 검출농장 반경 3km 이내(관리·보호지역) 가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즉시(12.9일까지) 완료하고,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일 실시
 - * 방역대 내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현황 파악 후 우리 부 제출 및 임상예찰 실시
 - 살처분 범위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8639('23.12.07.)에 의거하여 설정*하고, 해당 농장에 살처분 명령서[붙임 2]를 즉시 사전 발부

- * 관리지역(발생농가 500m 내) 전 축종 예방적 살처분(다만, 소규모농가는 역학사항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가만 실시 가능)+ 전남·전북에 한해 오리 발생시 500m에서 1km까지의 오리 추가 살처분
- 방역대가 타 지자체와 겹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
-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
 - * 시·군, 계열사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
- 살처분·매몰 등 현장 방역조치 대비 인력 및 장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,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확보
- 방역지역 설정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즉시 시행
-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·정밀 검사(PCR*)를 실시하고,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**
 - *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·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
 - ** 시·군, 계열사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
-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련시설*은 즉시 세척·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(정밀검사**)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
 - * 사료공장, 사료하차장, 왕겨업체, 식용란선별포장업(GP), 부화장, 분뇨·비료업체 등
 - **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·차량이 출입한 축산 시설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
-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및 방역관련자 비상대기 조치
- 전국 일시 이동중지 등 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
-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·도태 적극 추진
-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이행점검

□ 전라북도 외 지자체

- 의사환축 발생 지역 접경 지대는 이동통제 초소 설치
- 의사환축 발생 방역대가 관내 설정된 지자체는 해당 지역 내 소재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예찰 추진
 -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(닭·오리·거위·기러기 등 가금 사육 전업농)에 대해 '23.12.13일까지 정밀검사(PCR) 완료(관리·보호지역은 '23.12.11일까지)
- 방역대 내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현황 파악 후 우리 부 제출 및 임상예찰 실시
 - 살처분 범위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8639('23.12.07.)에 의거하여 설정*하고, 해당 농장에 살처분 명령서[붙임 2]를 즉시 사전 발부
 - * 관리지역(발생농가 500m 내) 전 축종 예방적 살처분(다만, 소규모농가는 역학사항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가만 실시 가능)+ 전남·전북에 한해 오리 발생시 500m에서 1km까지의 오리 추가 살처분
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·정밀 검사(PCR)*를 실시하고,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**
 - *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·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
 - ** 시·군, 계열사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련시설*은 즉시 세척·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(정밀검사)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
 - * 사료공장, 사료하차장, 왕겨업체, 식용란선별포장업(GP), 부화장, 분뇨·비료업체 등
 - **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·차량이 출입한 축산 시설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
- 관할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
- 관할 소규모 농가 및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전화,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실태 지도·홍보·점검
 -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·도태 적극 추진 및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이행점검
- 전국 일시 이동중지 등 명령 발생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

-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,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의무 위반사항 정밀 조사
 - 역학조사 시 농장 사육환경·방역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부 및 해당 지자체에 공유하고,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자체에 이첩
 -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'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' 결과를 우리 부 및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여 사전방역 조치에 활용토록 조치
- 기동방역기구 파견
 - 대상 지역: 전라북도 김제시
 - 주요 임무: 방역기술 지원, 살처분 인력 AI 방역 교육, 소독장비 운영, 이동 통제초소 설치·운영 및 사체처리 작업 등 기술자문, 현장 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실태 등 점검 및 방역조치 등
- 방역조치 대상 축산차량, 가금 사육농장 및 축산시설을 확정하고, 각 대상별 이동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우리 부에 즉시 보고 및 해당 지자체 통보
 - 지자체는 「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」에 따른 역학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, 소독·정밀검사 대상 가금농장·시설·차량에 대한 검사 이행 후 그 실적을 검역본부(방역감시과)에 일일 송부
- 축산차량 이동현황 및 방역지역 현황 등 보고
-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철저(비상연락망 구축 등)

□ 보건복지부(질병관리청)

- 「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」에 따라 방역 인력 및 물자(항바이러스제 공급 등)

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

□ 국방부·경찰청

- 시·군·구에서 현장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

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-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가축 및 생산물의 농장 밖 이동을 금지하고 외부인 및 차량 등의 진입 제한
 -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·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,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소독·기록 관리 철저
-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진입로 소독(생석회 살포 등)
- 의사환축 발생 지자체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
 - * 검출농장 반경 3~10km 내(예찰지역) 가금농가는 12.9일까지 전화예찰을 완료하고,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일 실시

□ 농협경제지주

- 의사환축 발생지역 내 가금농가 소독 실시(공동방재단)
 -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, 의사환축 발생 시·군 내 모든 가금농가로 확대하여 실시
- 가금류에 대한 일제 검사 등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료채취 인력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

□ 관련 협회(단체 포함) 및 소속 농가

- 중앙 및 지방정부, 관련 단체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
 -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가금 사료 확보 등 대비 철저 홍보
-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, 행사 등 금지
-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(1588-4060, 9060)토록 전파
-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및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 적극 협조 홍보
- 금번 의사환축 발생지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가금 농가 방문 자제 및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

나. 방역지역 내 특별 방역강화 조치(방역대 해제 시까지)

□ 보호지역 내 방역 강화 조치

- 해당 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는 5일 간격 정밀검사 실시
- 위험농장에 대해서는 소독·통제초소 설치·운영
- 보호지역 내 전 가금 축종(전업규모) 매일 전화 예찰 등 특별관리
- 전용 소독차량 배치,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 및 인근 소하천·저수지 주변

